충청북도 건축위원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3년 1월 27일

· 회부일자 : 1993년 1월 29일

3. 제정이유

·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전문인의 실사와 심의로 건축행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제정

4. 주요골자

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선 지정사항 심사

나. 21층 이상 41층 미만인 건축물 또는 100,000 ㎡이상 300,000 ㎡ 미만의 건축 사전심사

다. 문화재 보호구역 (100 M) 내 건축 심의

라. 건축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위임한 사항이나 도지사가 부의하는 건축심의 또는 심사

5. 검토의견

충청북도 건축위원회 조례안을 검토한 바,

건축법 제4조의 개정에 따른 이법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두도록 명시되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으로 건축위원회의 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의 제2조 (구성)의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20인 이내의 구성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50인 이내 위원과 위배됨이 없으며,

동조례 제4조 (기능)에서도 건축법 제5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항 (관련법규 발췌 참조) 규정에 부합되므로 동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조례안 및 참고자료 : 별 첨